

## 경운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교”라 한다) 「교직원보수규정」 제5조 제1항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「경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」 제2조 제2항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3조(보수의 결정)** 이 규정에 의한 보수의 결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.

**제4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보수라 함은 기초연봉 및 성과연봉과 각종 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
2. 기초연봉이라 함은 당해학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 지급 되는 금액이며 급량비와 연구보조비를 포함한다.
3. 성과연봉이라 함은 교육 및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기여를 반영한 금액이며,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4.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, 처우개선분을 포함한다.

### 제2장 연봉 및 수당

**제5조(연봉)** 교원의 연봉은 기초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기준연봉으로 하고, 직무수행 수준 등을 반영하여 책정한다.

**제6조(기초연봉)** 기본급에 해당되며, 동일 직급 정년계열 전임교원 연봉을 기준으로 교원의 직무수행평가 반영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한다.

**제7조(성과연봉)**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.

**제8조(처우개선분)**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교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.

**제9조(보직수당)** ① 보직에 임명된 교원에 대하여 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②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상위직 보직수당을 지급한다.

**제10조(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)** 교원의 직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 (복리후생비)**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3장 보 칙

제12조(보칙)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보수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「경운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」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